

# 2024년 제1차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 운송사업자 모집 사업설명자료

2024. 04. 2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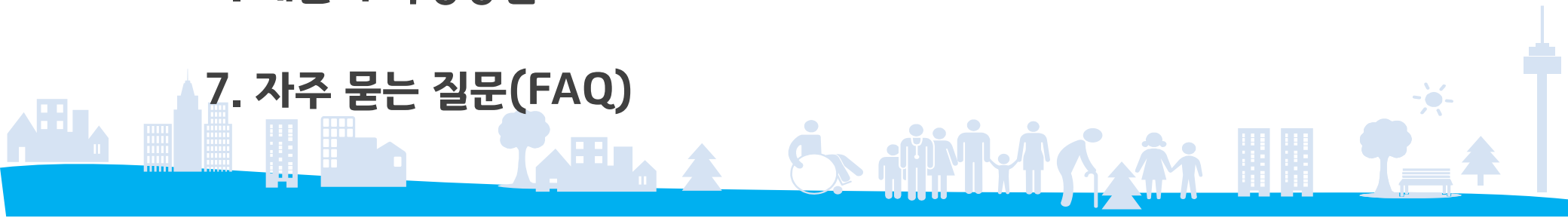
경기교통공사  
(시내버스준공영팀)



# ☰ 목 차

---

1. 사업개요
2. 추진일정
3. 사업시행 조건(일반 · 특수)
4. 신청자격 및 방법
5. 운송사업자 선정
6. 제안서 작성방법
7. 자주 묻는 질문(FAQ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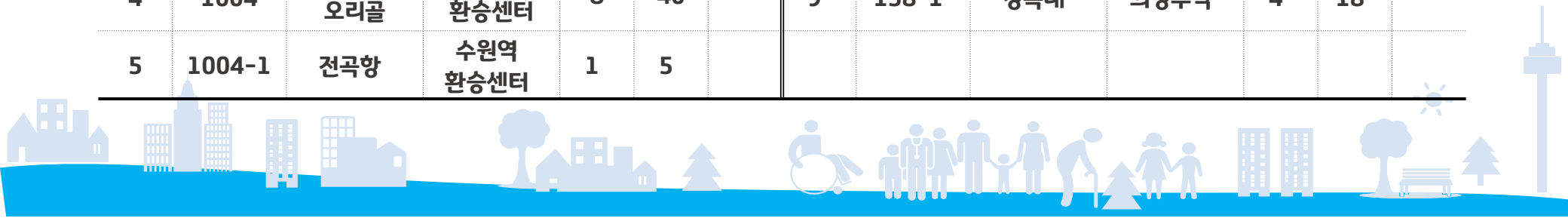
# 1. 사업개요

---

# 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 운송사업
- 사업대상 : 9개 노선 / 64대
- 면허기간 : 5년 + 4년(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)
- 노선현황

연번	노선번호	기점	종점	운행 대수	운행 횟수	비고	연번	노선번호	기점	종점	운행 대수	운행 횟수	비고
1	64	동탄 차고지	안양역	7	28		6	31-7	군포 오금동	부천역 차고지	8	30	
2	32-4	수원동부 차고지	향남주공 18단지	5	17		7	111	이천버스 공영차고지	여주대 하차장	7	38	
3	67	교하 차고지	화정역 3호선	10	60		8	114	장호원시의 버스터미널	광주 터미널	14	48	
4	1004	장외리, 오리골	수원역 환승센터	8	40		9	138-1	경복대	의정부역	4	18	
5	1004-1	전곡항	수원역 환승센터	1	5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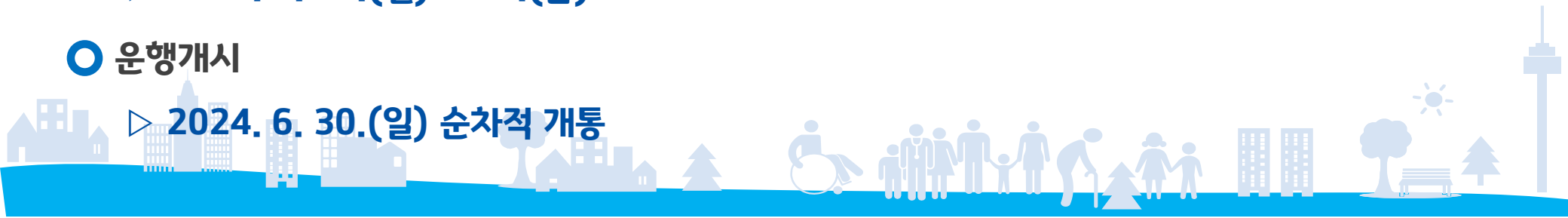


## 2. 추진일정

---

## 2. 추진일정

- 사업신청자 접수
  - ▶ 2024. 5. 9.(목) 14:00 ~ 17:00
-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
  - ▶ 2024. 5. 16.(목) 13:30 ~ 18:00
-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
  - ▶ 2024. 5. 21(화) 14:00 이후
- 우선 협상대상자 협상 및 이행협약 체결
  - ▶ 2024. 5. 22.(수) ~ 31.(금)
- 한정면허 발급
  - ▶ 2024. 6. 24.(월) ~ 28.(금)
- 운행개시
  - ▶ 2024. 6. 30.(일) 순차적 개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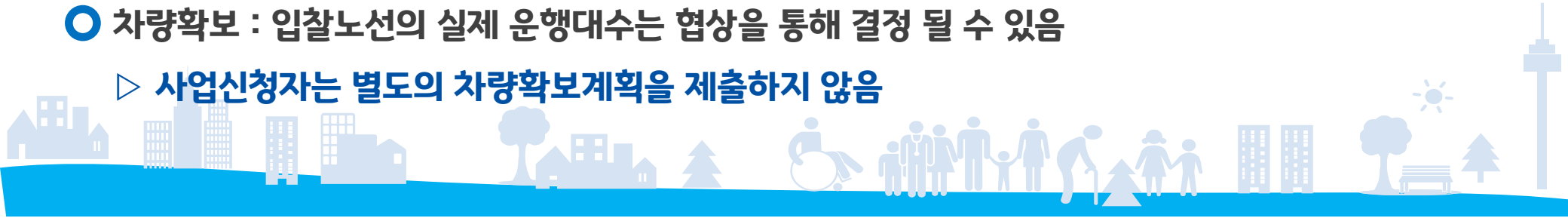


# 3. 사업시행 조건(일반)

---

### 3. 사업시행 조건(일반)

- 면허기간 : 5년 + 4년
  - ▷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4조 및 규칙 제17조 제5항에 따라 기본 5년, 서비스 평가를 통한 4년 연장, 최대 9년간 한정면허를 부여
  
- 노선 및 운행 계획 : 제안공고문의 운행 계획을 기본으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결정
  - ▷ 실제 운행대수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최종 결정
  
- 재정지원 : 운송수입금이 운송비용보다 적은 경우 부족금액 재정지원
  - ▷ 입찰노선 협상금액
    - 해당 입찰노선의 ‘항목별 기초금액’ 에 대한 ‘사업신청자’가 제출한 ‘항목별 제안금액’ 의 비율
    - ➡ 각 사업노선의 ‘노선의 항목별 기초금액’ 에 적용하여 산정
  
- 차량확보 : 입찰노선의 실제 운행대수는 협상을 통해 결정 될 수 있음
  - ▷ 사업신청자는 별도의 차량확보계획을 제출하지 않음





### 3. 사업시행 조건(일반)

- 편의시설 : 와이파이, LED전광판(신차출고시)
  - ▷ 경기교통공사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설치 후 재정지원
- 차량디자인
  - ▷ 경기교통공사에서 지정한 디자인 및 방식으로 적용
- 차고지 및 부대시설 : 입찰노선별로 제안내용 작성
  - ▷ 자가차고지 ➡ 차고지증명서 제출
  - ▷ 임대차고지 ➡ 차고지에 대한 임대계약서 제출
  - ▷ 공영차고지 ➡ 관할관청의 사용계약서 제출
- 근로자 관리 : 1일 2교대, 재정지원 기준 운수종사자 시급, 근로 및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준수



# 3. 사업시행 조건(특수)

---

### 3. 사업시행 조건(특수)

- 입찰노선에 「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 전환노선 운행 중 차량 양도 협약서」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
  - ▷ ‘운송사업자’ 로 선정된 자는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한다.
  - ▷ ‘운송사업자’ 로 선정된 자는 기존 차량을 양수 받아야 한다.
  - ▷ 기존 차량 양수 후 협상시 보유한 다른 차량으로 대체 할 수 있다.
  - ▷ 협상과정에서 운수종사자 고용승계 및 차량양수를 하지 않을 경우 협상 결렬 한다.  
다만, 차량에 압류, 저당 등 문제 발생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

# 4. 신청자격 및 방법

---

## 4. 신청자격 및 방법

- 신청자격 : 법인 및 법인설립 예정 자 또는 개인
  - ▷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가 가능한자
  - ▷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조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신청방법 : 사업계획서 + 부속서류를 경기교통공사 시내버스준공영팀 방문제출
  - ▷ ‘사업신청자’가 2개 이상의 입찰노선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, 입찰노선별로 제안서를 각각 제출
  - ▷ 제안서는 기한 내 경기교통공사에 제출
- 유의사항 : ‘사업신청자’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  - ▷ 제출한 제안서, 기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
  - ▷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, 한정면허 취소,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음



# 5. 운송사업자 선정

---

## 5. 운송사업자의 선정

- 제안서 사업수행능력, 입찰가격평가, 가·감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
  - ▷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
  - ▷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
  - ▷ 기술능력평가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
  - ▷ ‘제안금액’이 ‘입찰노선 기초금액’을 초과하거나, 금액산출내역서의 금액 불일치시 협상제외
  - ▷ 일차노선 ‘사업신청자’가 단독일 경우, 재공고 없이 1개 제안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
  - ▷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
  - ▷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‘운송사업자’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
  - ▷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인·면허 발급 처리절차 등 운송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연 또는 기피할 경우 ‘운송사업자’ 선정 취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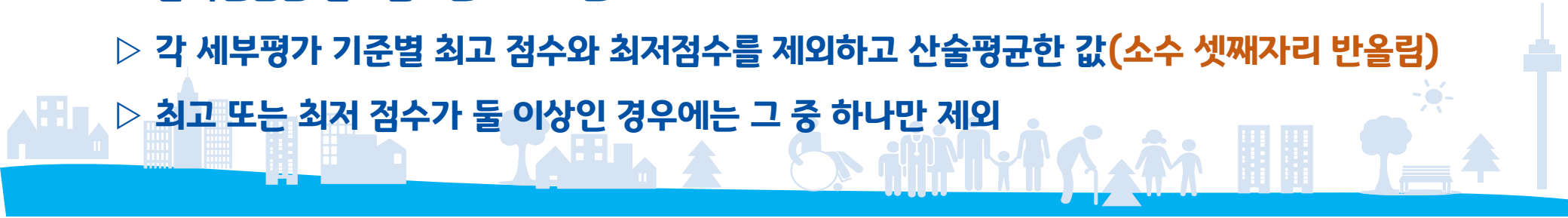
## 5. 운송사업자의 선정

### ○ 제안서 평가방법

- ▷ 정량적 평가, 입찰가격 평가, 가·감점 평가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
- ▷ 중대한 교통사고 적용기간 : 입찰공고일 전 1년가
- ▷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(제안업체 추천으로 선정)를 구성하여 평가
- ▷ 제안서 설명에 불참할 경우 사업신청 취소

### ○ 제안서 정성적 평가(평가위원회)

- ▷ 제안서를 토대로 ‘평가위원’이 평가
- ▷ 지정된 ‘질의응답’ 시간에 ‘평가위원’이 질이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
- ▷ 평가시간 사업신청자당 20분(제안서 설명 10분, 질의응답 10분)
- ▷ 참석인원은 업체별 3인으로 제한
- ▷ 각 세부평가 기준별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(소수 셋째자리 반올림)
- ▷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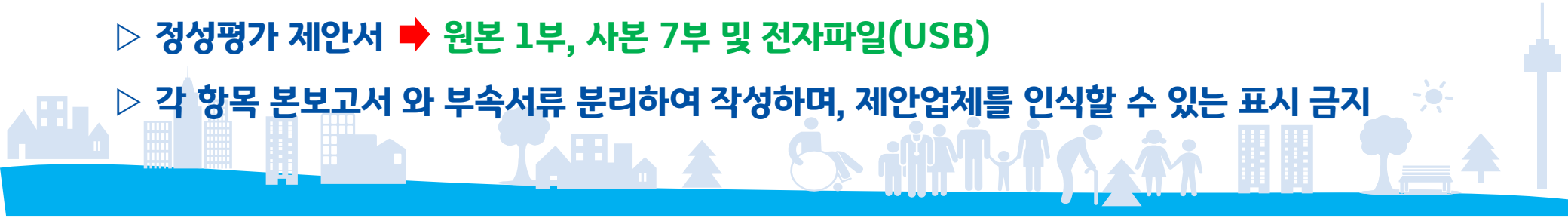


# 6. 제안서 작성방법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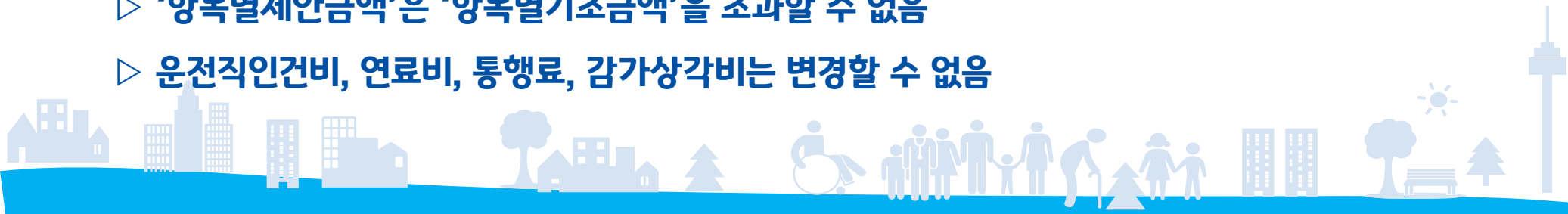
## 6. 제안서 작성방법

- 제안요청서 포함된 양식으로 작성
  - ▷ **신명조체, 13포인트로 작성함**
- 모든 사업계획서는 흑백으로 작성
- 제안요청서 '5.2 사업계획서 목차' 순서로 작성
- 입찰참가서류 1부, 가격관련서류 1부, 정량평가 제안서 1부, 정성평가 제안서 8부를 제출
  - ▷ **입찰참가 서류 ➡ 원본 1부 및 전자파일(USB), 가격제안서는 USB미포함**
  - ▷ **가격관련서류 ➡ 원본 1부 밀봉 제출**
  - ▷ **정량평가 제안서 ➡ 원본 1부 및 전자파일(USB)**
  - ▷ **정성평가 제안서 ➡ 원본 1부, 사본 7부 및 전자파일(USB)**
  - ▷ **각 항목 본보고서 와 부속서류 분리하여 작성하며,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 금지**



## 6. 제안서 작성방법

- 5.2 사업계획서 목차 - 입찰참가 서류 - 부속서류 - 「**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증명서, 신분증**」
  - ▷ 제안서 접수자와 평가위원회 참석자의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증명서, 신분증 제출
- 5.2 사업계획서 목차 - 가격관련 서류 - 본보고서 - 「**가격제안서 / 금액산출내역서**」
  - ▷ 원본 1부 밀봉하여 제출
- 5.2 사업계획서 목차 - 정량평가 제안서 - 본보고서 - 「**재무건전성 관련 신용평가 증빙자료**」
  - ▷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 유효기간은 ‘제안서 마감일’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
- 5.2 사업계획서 목차 - 정량평가 제안서 - 부속서류 - 「**차량보험요율 자료**」
  - ▷ 평균 보험요율이 아닌 실제 적용 보험요율 자료제출(사업공고일 기준 2년간 대인,대물 보험요율)
- <별지 양식 8> 가격제안서
  - ▷ ‘항목별제안금액’은 ‘항목별기초금액’을 초과할 수 없음
  - ▷ 운전직인건비, 연료비, 통행료, 감가상각비는 변경할 수 없음



## 6. 제안서 작성방법

### ○ <별지 양식 18> 차고지 확보계획

#### ▷ 1. 차고지 위치와 수용능력

➡ 차고지 면적은 전체면적, 기사용면적, 실제 사용가능 면적을 구분

#### ▷ 2. 차고지 확보율

➡ 입찰노선 차량이 실사용 할 차고지만을 대상으로 확보율 계산

#### ▷ 3. 차고지와 기점과의 거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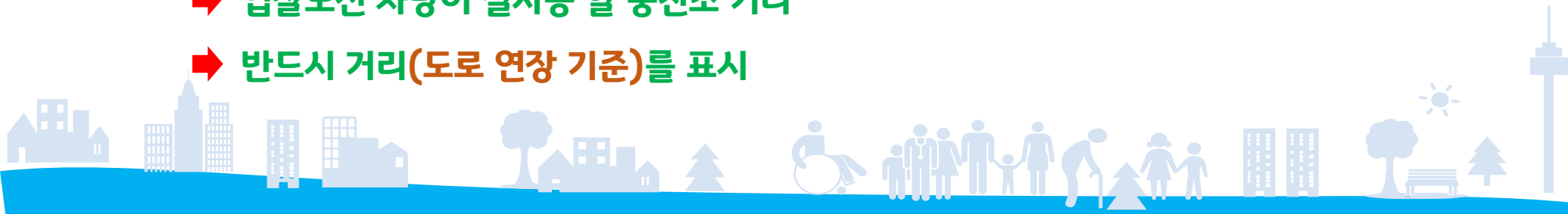
➡ 입찰노선 차량이 실사용 할 차고지만을 대상으로 거리 계산

➡ 반드시 거리(도로 연장 기준)를 표시

#### ▷ 4. 차고지와 충전소의 거리

➡ 입찰노선 차량이 실사용 할 충전소 거리

➡ 반드시 거리(도로 연장 기준)를 표시



## 6. 제안서 작성방법

### ○ <별지 양식 19> 운송부대시설 확보계획

▷ 운송부대시설은 법 및 편의시설로 구분하여 작성

➡ 입찰노선이 실 사용하는 소재지, 면적, 거리 작성

▷ 사업노선별로 노선의 기점, 4가지 법정 운송부대시설의 위치도

➡ 입찰노선이 실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대상으로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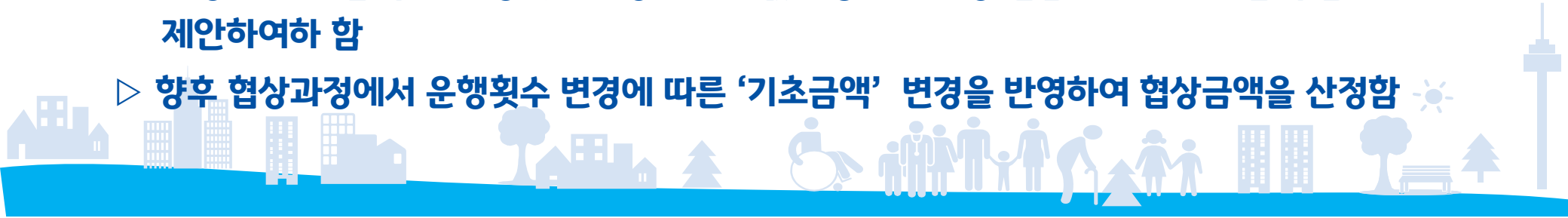
➡ 반드시 거리(도로 연장 기준)를 표시

### ○ 운행횟수 변경

▷ 각 노선의 운행횟수를 조정할 경우, 해당노선의 경로특성, 교통정체,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최적의 운행횟수를 제안

▷ 이 경우 '제안금액'은 운행횟수 변경과 관계없이 공고된 해당 입찰노선의 '기초금액'을 기준으로 제안하여야 함

▷ 향후 협상과정에서 운행횟수 변경에 따른 '기초금액' 변경을 반영하여 협상금액을 산정함



# 7. 자주 묻는 질문(FAQ)

---

## 7. 자주 묻는 질문(FAQ)

- ▷ 2개 이상의 노선에 입찰 할 경우 제안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?
  - ➡ 2개 노선이상에 입찰 할 경우 2개 이상의 제안서를 각각 제출 해야함.
- ▷ 차량확보계획 제출 시 차량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지?
  - ➡ 차량확보계획은 제출하지 않으며, 그에 따라 차량등록증은 제출하지 않음.
- ▷ 제안서 양식을 변경해도 되는지? 제안서 양식의 '표'의 행을 추가해도 되는지?
  - ➡ 제안서 작성은 별지양식의 변경없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  - ➡ 기재할 양이 많아 표의 행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.
  - ➡ 사업신청자가 별도의 내용을 추가로 제안할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을 <별지양식> 이후에 추가로 작성함.
- ▷ 제본을 하게 되면 등기서류 등도 양면인쇄인지?
  - ➡ 등기서류 등 증빙서류가 단면일 경우에는 단면으로 제본하여 제출함.



## 7. 자주 묻는 질문(FAQ)

- ▷ 흑백 작성이 원칙인데, USB 제출 파일도 흑백이어야 하는지?
  - ➔ USB에 제출하는 파일은 컬러 포함 가능하며, 출력 시 흑백으로 출력하여 제본함.
  - ➔ 표지도 흑백으로 제본하며, 구분 속지는 컬러 속지 가능함.
- ▷ 정량평가 제안서의 보고서 중 임금체불 증빙, 교통사고 현황자료는 별도 자료제출이나 준비 할 것은 따로 없는지?
  - ➔ 공사에서 직접 노동청 확인 및 지자체 협조로 확인함.
- ▷ 보험요율 평가에서 신규업체는 최저인 것인지?
  - ➔ 신규업체는 대인, 대물 각각에 대하여 차량 보험요율 100% 적용함.
- ▷ 차량보험요율과 관련하여 1개 법인이 2개 이상의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
  - ➔ 많은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의 보험요율을 적용함.
- ▷ 회사로 보험요율이 나오지 않고, 개별 차량으로 나올경우 어떻게 되는지?
  - ➔ 개별 차량의 보험요율을 평균하여 적용.





## 7. 자주 묻는 질문(FAQ)

- ▷ 중복도의 경우 왕복으로 표시하는데 상행과 하행의 노선이 일부 상이할 경우 상행과 하행이 같은 구간만 인정하는지 아니면 상이하더라도 중복된 경우 다 합산하는지?
  - ➡ 노선중복도는 사업노선과 상행, 하행이 같은 구간만 인정 하며, 상이한 부분은 제외 됨.
- ▷ 중복 구간 A~B(100m)사이에 노선이 3개 있으면 3개가 각각 다 중복도가 인정되어 100m X 3개 노선 = 300m가 인정되는지 중복개념으로 100m만 인정되는지?
  - ➡ 노선 중복도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노선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, 동일 방향으로 중복된 노선이라면, 3개 노선의 중복거리 300m가 모두 인정되어 계산됨.
- ▷ 차량보험요율 작성시 최근 2년간인데 공제조합의 서류는 매년 4월 갱신으로 22년4월 ~ 23년3월, 23년4월 ~ 24년3월, 24년4월 ~ 25년3월로 표기되어 있어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?
  - ➡ 공고일 기준 적용되고 있는 보험요율(23년4월 ~ 24년3월, 24년4월 ~ 25년3월)로 작성.



- 감사합니다 -